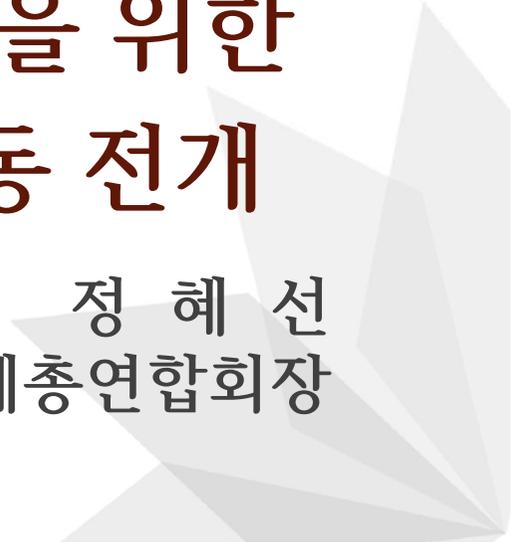




2022. 7. 7. (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정 혜 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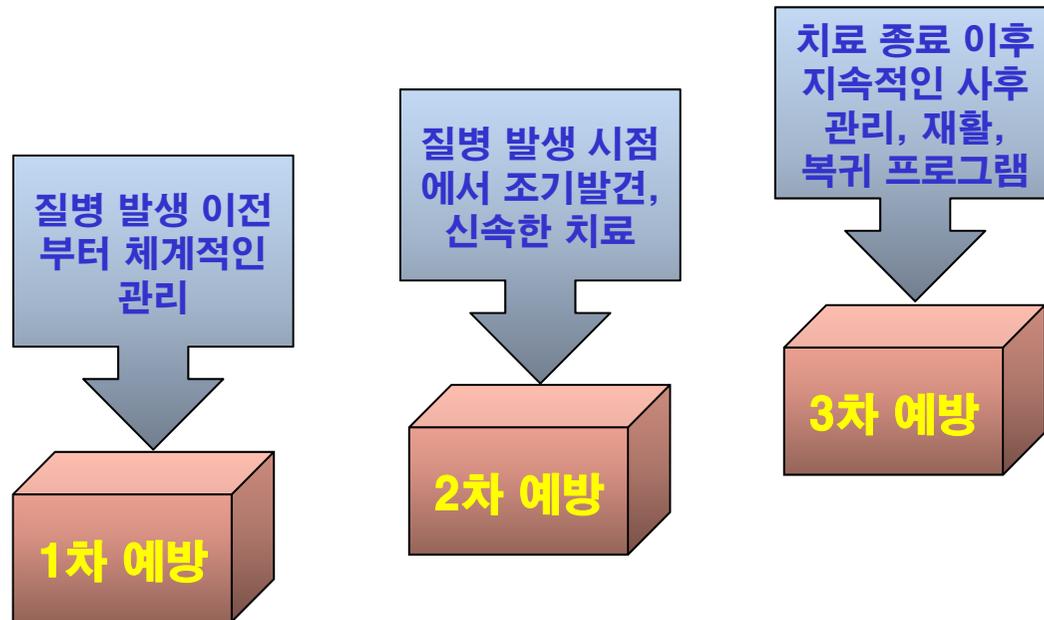
# 우리나라 인구 현황

- 우리나라의 총인구 51,829천명 (2020년)
  - 이 중 취업자 26,904천명 (전체 인구의 52%)
- 취업자 중
  - 직장인 20,332천명 (전체 인구의 39.2%)
  - 자영업자 6,573천명 (전체 인구의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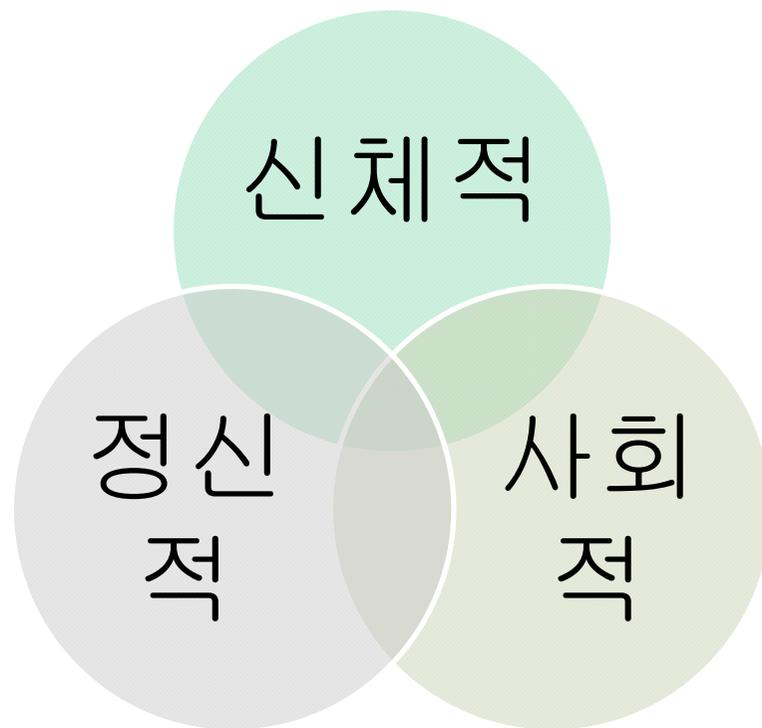
# 직장인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

-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냄
- 근로자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생활의 안정
- 성인기의 건강이 향후 노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저출산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 확보 방안
-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증진

# 산업재해 예방체계



#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강화



# 서명운동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산재사망자가 연간 2천명이 넘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음
- 지난 1월에 조사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90% 이상이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감이 높으므로 예방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 부담 감소
- 산재예방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하여 산재 예방 문화 조성
- 우리나라 인구의 20% 수준인 천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일반인에 대한 관심 증대

# 추진 개요

## ○ 추진단체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연대
- 안전보건 관련 언론사(안전신문, 안전세계, 안전정보)

## ○ 추진기간

- 기간 : 2022. 3. 2. (수) ~ 천만명 서명완료 시까지
- 완료 목표시기 : 2023년 12월까지 천만명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함

# 추진 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서명
- 한보총 회원단체 및 기업 등을 통한 서명
- 전국 주요 장소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 유관기관 행사 시 서명대 만들어서 서명 진행
- 사무실, 회사 등에 배너를 배치하여 QR 코드를 통한 서명 진행

# 발대식

- 일시 : 2022. 3. 2.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영배·이수진 국회의원, 박대수 국회의원(영상 축하), 한보총 임원, 한국노총 임원, 시민연대 대표, 안전보건언론사 대표 등 99명



# 홍보

- 한보총 발간 모바일 소식지에 서명운동 홍보
- 한국노총 행사 시 서명운동 부스 진행하여 홍보
- 한국노총 '노동과 희망' 잡지에 정혜선 회장의 기고문 게재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가자~ 200만 한국노총

노동과 희망

☰ 뉴스 칼럼 인터뷰 업종별 지역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토크쇼 노동N이

**[기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천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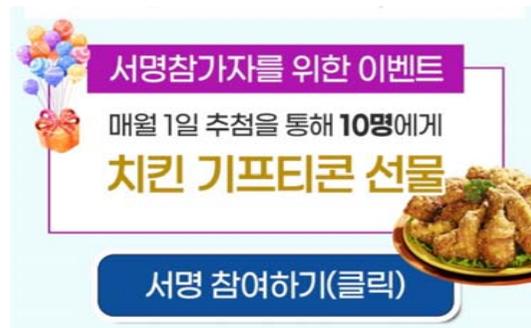
등록일 2022년04월01일 08시15분

Twitter Facebook YouTube Messenger

# 이벤트 개최

## ○ 기프티콘 증정

- 매월 1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 증정
- 2022년 6월 첫 이벤트 진행



# 홍보대사 (방송인 강석) 위촉

## ○ 위촉식

- 일시 : 2022. 7. 7. (목) 오전 10시
- 장소 : 킨텍스 제2전시관 302호

## ○ 홍보대사 활동

- 온라인 홍보물에 강석의 서명운동 참여 독려 게시
- 서명운동 관련 행사 시 참석하여 서명운동 참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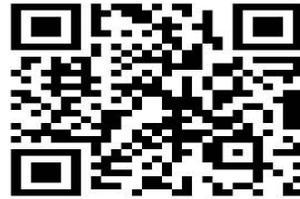
## ○ 슬로건

- 직장인이 안전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 직장인이 건강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천만명 서명운동

- 산재 사망자 연간 2천명
- 산재로 인한 장애인 하루 100명(연간 3만7천명)
-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산재사망률

# 서명참여 QR코드



# 핸드폰 QR코드 스캔

## 서명 참여하고 치킨 기프티콘 받자!

매월 1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증정  
(당첨자는 문자로 개별 연락)

| 기간 | 2022. 03. 02. ~ 천만명 도달 시까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연대, 안전신문, 안전세계, 안전정보

# 직업보건의 목표와 비전

비 전	근로자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목 표	근로자의 건강형평성 확보
전 략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정책, 제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추진
내 용	불건강요인(소득, 고용형태, 노동인구의 특성에 따른 요인)의 개선
대 상	모든 직종의 근로자

보건안전  
정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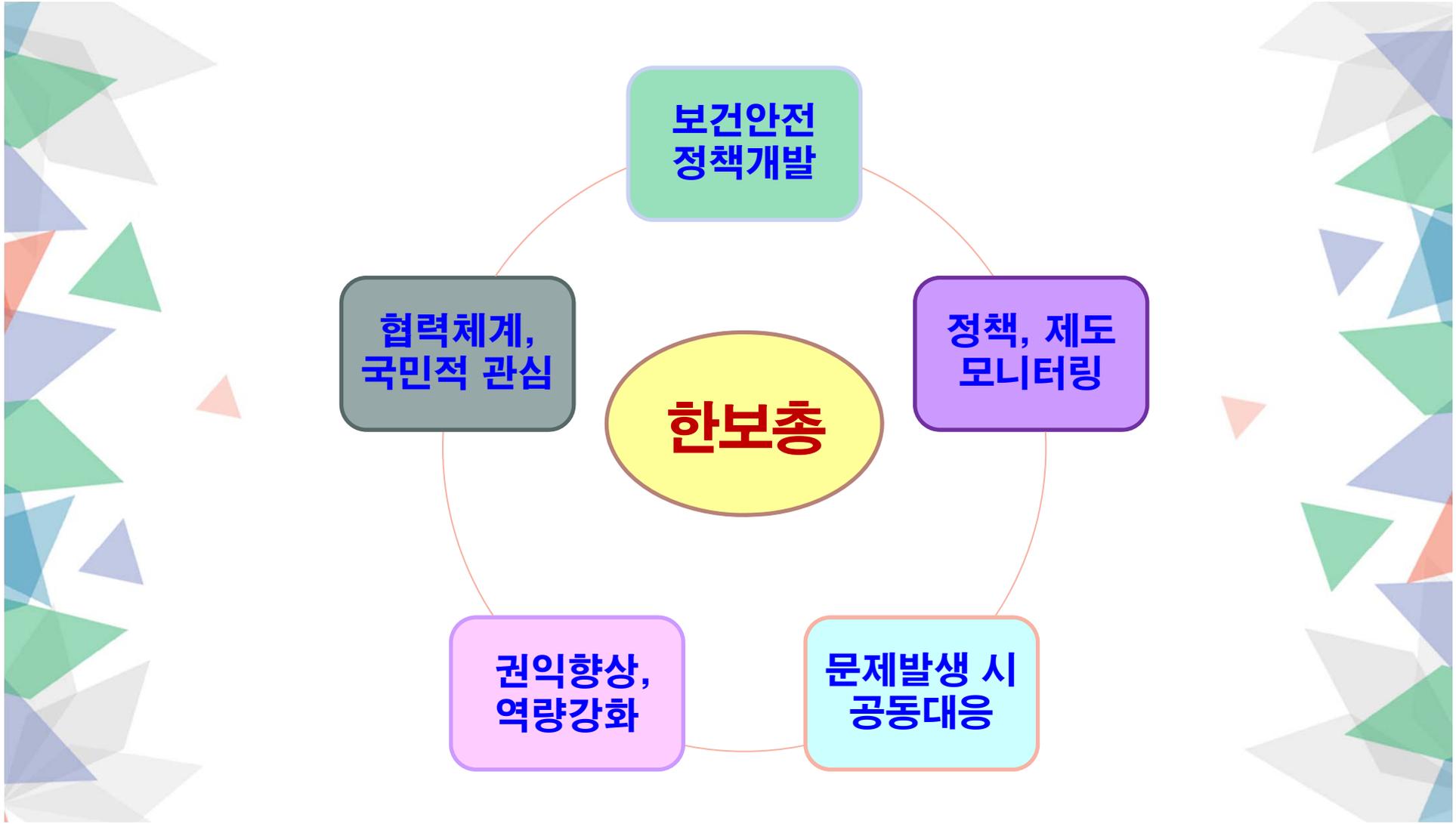
협력체계,  
국민적 관심

정책, 제도  
모니터링

한보총

권익향상,  
역량강화

문제발생 시  
공동대응





**Thank you**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2022. 7. 7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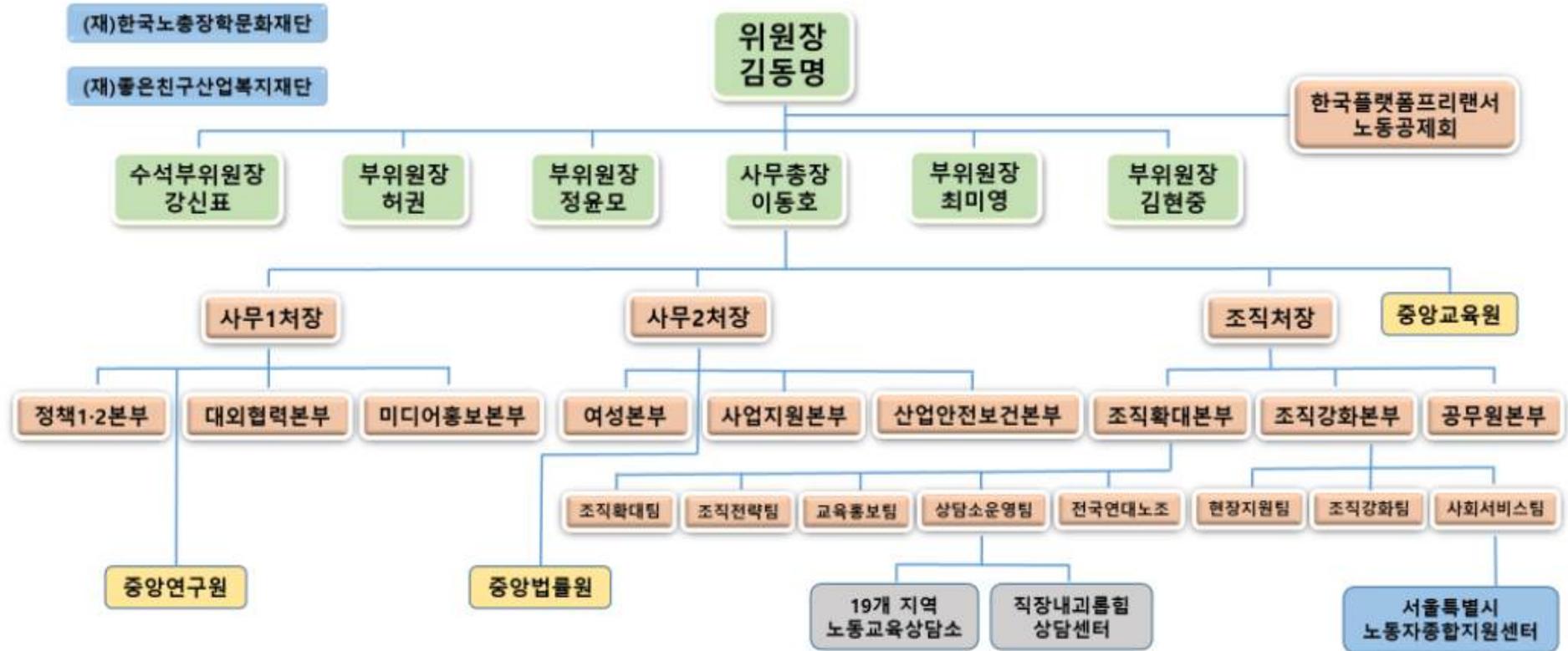
## □ 현황

- 조합원 수 : 140만명
- 사무국 직원 : 130명

## □ 조직현황

- 회원조합 : 화학노련 등 26개 회원조합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등 16개 시도 지역본부
- 지역지부 : 경기 수원 등 55개 지역지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국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 현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활동
- 산재보상 정책 활동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관련법령 제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재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활동
- 국제노동기구(ILO) 활동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제작 배포
- 365 안전보건 지킴이 다이어리 제작 배포
- 안전보건 길라잡이 배포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현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 노사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지원
- 중소기업장의 안전보건활동 평가 및 위험성평가 등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보건활동 지원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안전보건교육

- 노동조합 간부대상 안전보건 교육 (참여형, 업종별)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 - 카드뉴스



**사건수첩.**  
**발생범위/원인/증상이 다양한 근골격계질환**

신체 한 부위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있고, 하나의 조직 또는 동시에 주변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골격계질환은 다음 3가지 주요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근골격계질환의 주요특징 3가지**

- 불명확한 질환 분류**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인 상세 불명** 작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 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차만별인 질환 증상**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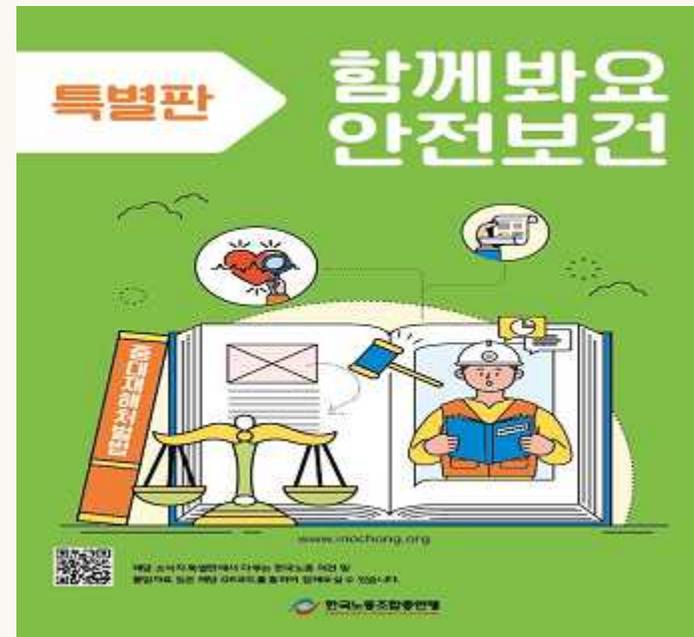
### - 산재예방 동영상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 - 안전보건 소식지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 - 안전보건 포스터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활동
  - 안전보건 온라인 캠페인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



#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

**알 권리**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의견을 경영책임자와 함께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01**  안전보건관리 관련 모든 정보 공개

**02**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 적극 공개 및 노동자 참여

**주요 공개 정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활동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

#### 참여 권리



노동조합은 공식 절차 외 각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제안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종사자 참여'를 요구합니다.



제안 독려 및 신고  
· 제안 조치결과 공개



안전보건 활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관련 종사자 참여



하청/파견/공급,  
판매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의논

#### 종사자 참여 과정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단위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안전보건관리 규정
- 안전보건교육
-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진단
- 작업중지권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MSDS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보상



# 단위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안전검사 (프레스, 크레인 등 13종, 2년1회)

# 산안법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근로자 대표의 통지요청(제3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도급인의 이행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운영의 장점

-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현장노동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
- 위원회 내에서 안전보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의 기구로서 작동
-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위원 신분 보장

-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위원은 원칙적으로 비상임, 무보수
- 위원회 회의 참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전수집, 회의참석, 현장점검 등이 포함

## □ 위원회 개최

- (정기회의)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재해 발생시)
- (의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 사업주의 의지 표명
  - 실무회의 운영
  - 운영규정의 마련
  - 위원의 활동시간 보장(유급)
  - 위원의 전문성 확보(교육 실시)
  - 노사 대표의 필수 참석
  - 정기회의 필수 개최
  - 회의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
  - 회의록 작성
  -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
-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재예방 전문단체
- 노동자(노조)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의 활성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 사업주는 명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②)

- 노동조합(조합원)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위험성 평가

## □ 위험성 평가의 노동자 참여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결과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험성평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
  - 위험의 제로화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

##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 □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노동자의 작업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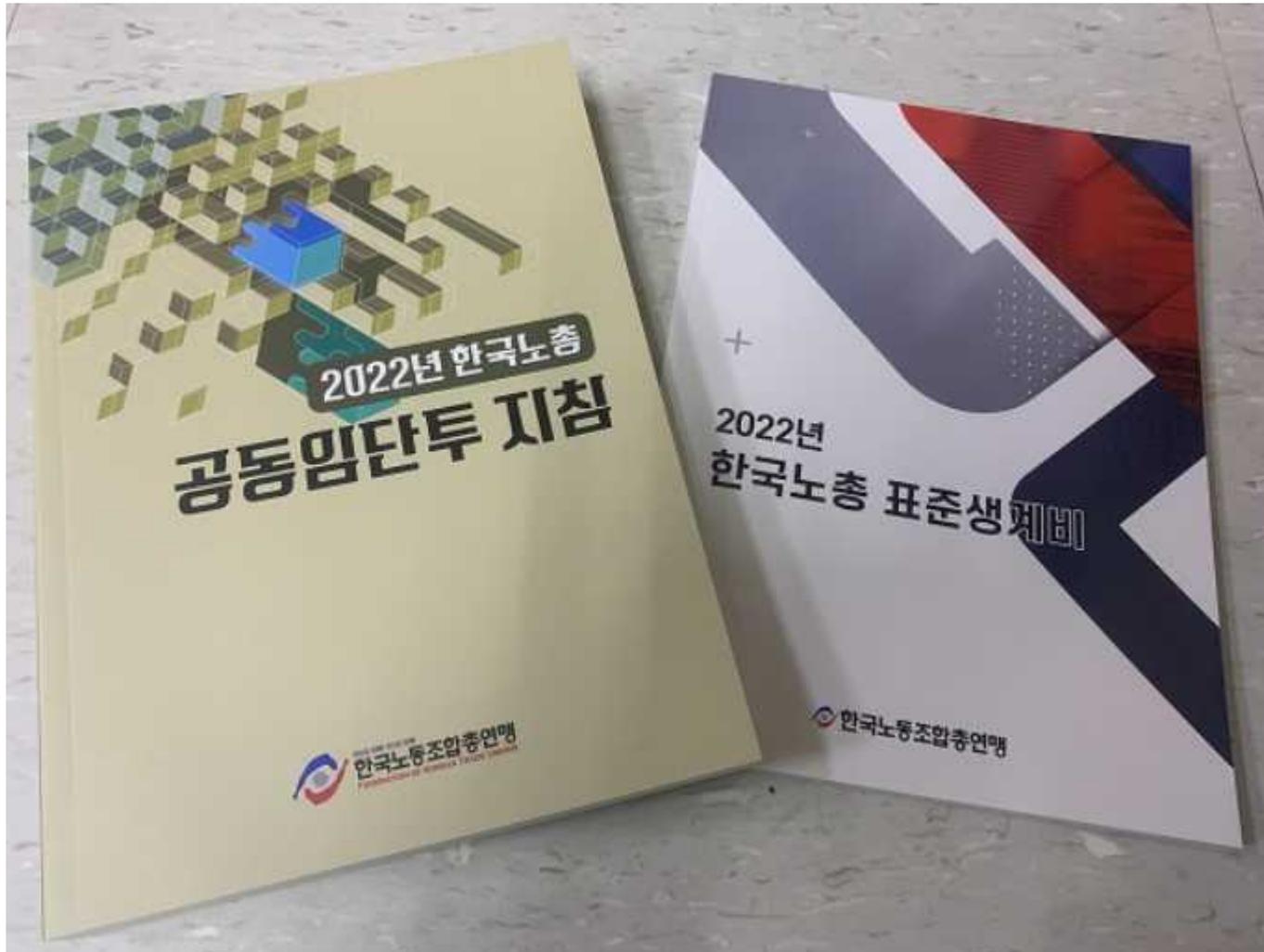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하고 대피  
- 작업중지에 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단체협약 명시**

## 작업중지 조치(제57조)

###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토사, 건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 작업중지 해제 심의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청취  
(사고원인이 제거되고 개선되었는지)

# 공동 임단투 지침



#### 4) 안전보건점검(진단)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

- 주기적인 안전보건점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는 물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안전 진단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하고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의 신뢰도 확보 및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보건점검(진단)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결사항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논의,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

##### [안전보건점검(진단)]

- 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주기적으로(매분기 또는 반기) 안전보건점검(진단)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시 이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건점검(진단)에 대하여 안전보건연간 활동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안전보건점검(진단)의 실시시기, 점검자(조합간부 포함), 내용 등을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③ 안전보건점검(진단)은 사업주의 유해·위험예방조치 의무를 근거로 하여 작업장 내 조합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동하여 안전보건점검(진단)을 실시한다.
- ④ 회사는 안전보건점검(진단)의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 ⑤ 안전보건점검(진단)은 위험성 평가 등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점검(진단)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점검(진단)이 실시되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별도로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다.
- ⑦ 회사는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실시한다.
- ⑧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⑨ 회사는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중지권]

- ① 회사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노동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 할 수 있다.
- ② 단 1항에 의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는 그 즉시 관리감독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62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건위원 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노동자의 작업안전중지를 통보받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그 즉시 이 사실을 회사와 부서에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에 대해서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지된 작업의 안전·보건상 조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동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재해자의 보상기준]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산재보험 비급여(환자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요양신청의 과정에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C/T, MRI, HR C/T(고해상도 영상 단층촬영) 초음파, 촬영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단, 산재적용시 제외함
  2. 휴업보상 : 회사는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와 기존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전 근무할 때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3. 장해보상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완치 후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산재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3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4. 유족보상과 장례비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게 산재급여 외에 2,000일분의 유족보상과 200일분의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한다.
  5. 우선 채용 및 학자금 지급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부양가족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직계자녀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작업 중 타박상, 골절후유증, 요추염좌, 경견완장애, 두통, 위장병, 근육통 등과 관련하여 한방 및 한의사 치료를 원할 경우 공상 환자(4일 미만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한다.
- ②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치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한다. 단, 임금 및 기타 노동조건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
- ③ 회사는 조합원들이 불의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원 가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단체 재해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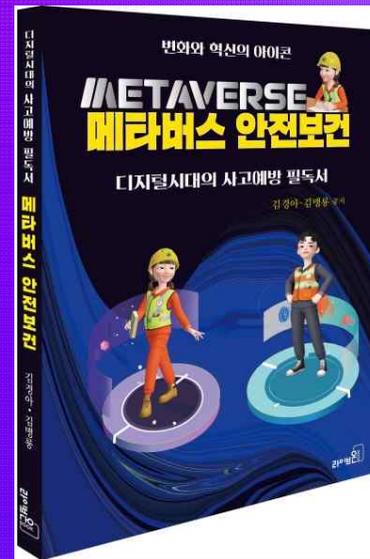


---

#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방안

라이브온 컴퍼니 김경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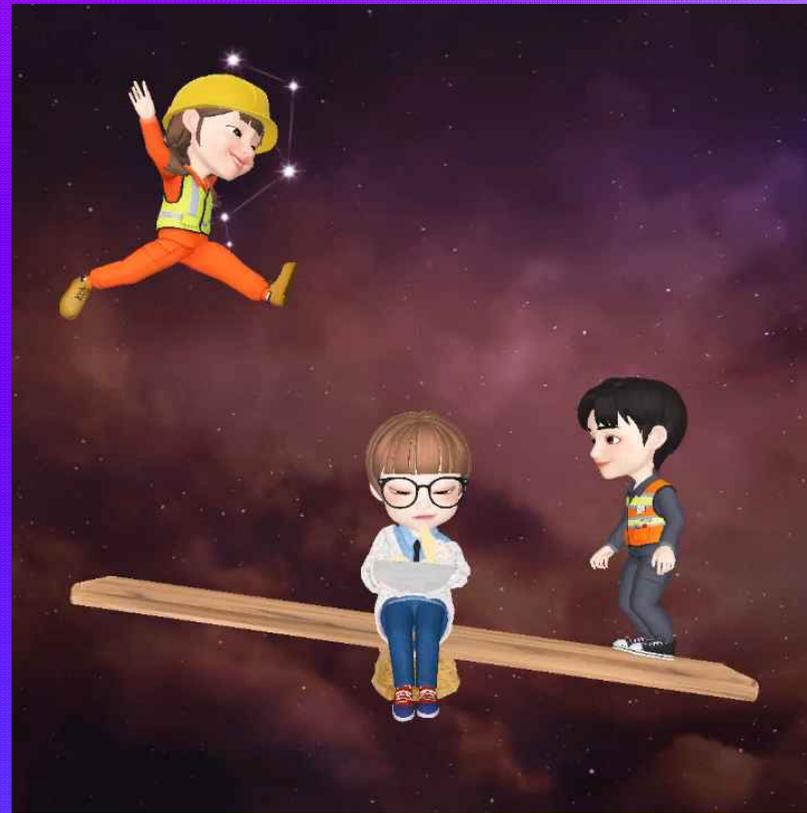
---



- 現) 뉴미디어 교육기업 라이브온컴퍼니
- 現) 오산대학교 공연축제공텐츠과 겸임교수
- 現) 유튜브강사협회 회장
- 前) MBC문화방송국 교통캐스터, 아나운서



# [안바타]



---

# CONTENTS



---

## 01 메타버스란

1. 메타버스의 4가지 세계
2. 메타버스 활용 사례

## 02 메타버스와 보건안전

1. 보건안전 in 메타버스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
-

# 메타버스

메타(Meta) + 유니버스(Universe)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될 가상세계  
가상 현실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실생활에 연결되는 미래의 라이프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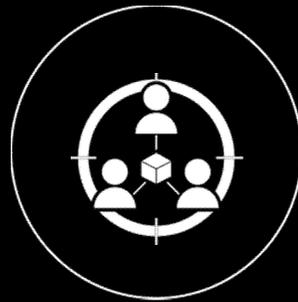
# 메타버스

(ASF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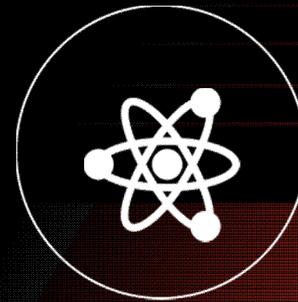
## 라이프로깅

온라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기록  
SNS



## 거울세계

현실세계의 미러링  
효율성 확장성  
구글어스, 배달앱



## 증강현실

현실 세계에 가상을 덧입힘  
(Argmented Reality)  
포켓몬고



## 가상세계

완전한 가상의 세계  
(Virtual Reality)  
오кул러스,로블록스

# 메타버스 플랫폼 유형

현재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 환경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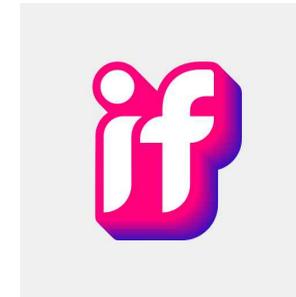
게임형 메타버스  
게임제작자 40만명  
자체통화 로벅스 경제



게임형 메타버스  
미국10대 여가시간의 25%  
BTS 신곡발표



SNS형 메타버스  
10대 이용자 80%  
네이버



모임형 메타버스  
아바타 인플루언서 모집  
SK텔레콤



모임형 메타버스  
실리콘밸리 화상회의  
게더(미국스타트업)

구분	정치	기업	엔터테인먼트	행사	마케팅
사례	선거후보 유세공간	사내 회의 직원 교육	콘서트 팬미팅	입학식,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신제품 홍보

| 분야별 메타버스 이용 사례 |

# 메타버스 활용사례(엔터테인먼트)



BTS  
신곡발표

트레비스스캇  
포트나이트  
콘서트



4+4  
걸그룹  
에스파



사이버가수  
아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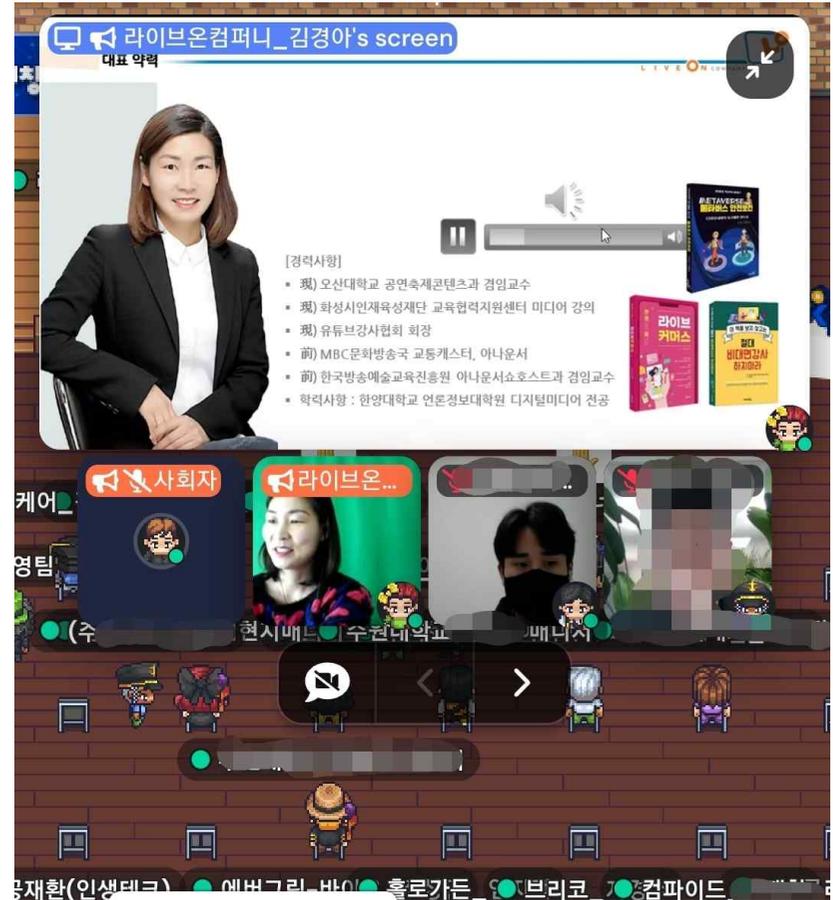
# 메타버스 활용사례(교육)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광운대  
메타버스 수업



창업진흥원 성과공유회

# 메타버스 활용사례(지자체)



김포시 온라인 시상식



서초구청  
문화여가  
복합시설



부산  
온라인  
축제



전주  
미래전략  
포럼

# 메타버스 활용사례(기업)



롯데건설 서포터즈 발대식



남동발전 간담회



농협금융 우수직원 시상식

## 메타버스 활용사례(메타폴리스 - 직방)

실제 사무공간을 없애고  
사육을 가상공간(메타버스)으로 옮김  
(2021년 6월 강남 본사 사무실 폐쇄)

전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온라인으로 근무.  
메타폴리스 개발팀과  
서비스 운영팀을 따로 두고 운영

제주도 직원 채용 - 해외채용  
가상공간 임대 사업



## 메타버스 활용사례(안전)



〈 2021 메타버스 서울 안전 한마당 〉



〈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안전교육소 〉

## 메타버스 활용

캠핑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 사고 위주로 구성  
텐트 내 화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사례로 보여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알려줌

- △ 캠핑 갈 때 꼭 챙겨야 할 필수품
- △ 올바른 텐트 설치 방법
- △ 전기선(릴선) 활용법

안전체험과 함께

텐트, 모닥불, 캠핑카 배경의 포토 존 등 활동 가능

DB손해보험에 “JOIN” 하는  가지 방법!

프로미 캠핑 월드에서 **JOY!**

프로미 타운에서 **GAIN!**



프로미 캠핑 월드에서(제페토)  
안전체험 JOY해요!

JOIN하기 →



# 메타버스 활용하는 건설업계 채용 홍보 안전교육 적용

메타버스 발 담근 건설사들 안전관리  
기존 이론교육에서 탈피 실제 사고상황 체험



또,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롯데건설의 **메타버스 채용설명회장**인 L-Town에는 ▲직무상담 ▲설명회 ▲홍보영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건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인턴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턴사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공간에 마련된 사무실·회의실·교육장 등에서 발표와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건설상품·취업준비교육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메타버스 가상공간 내에 **조직문화 홍보관을** 개설했다.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수립하겠다는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새로운 조직문화코드는 자율·협업·수평·도전으로, 외부 환경변화와 내부 상황을 고려해 수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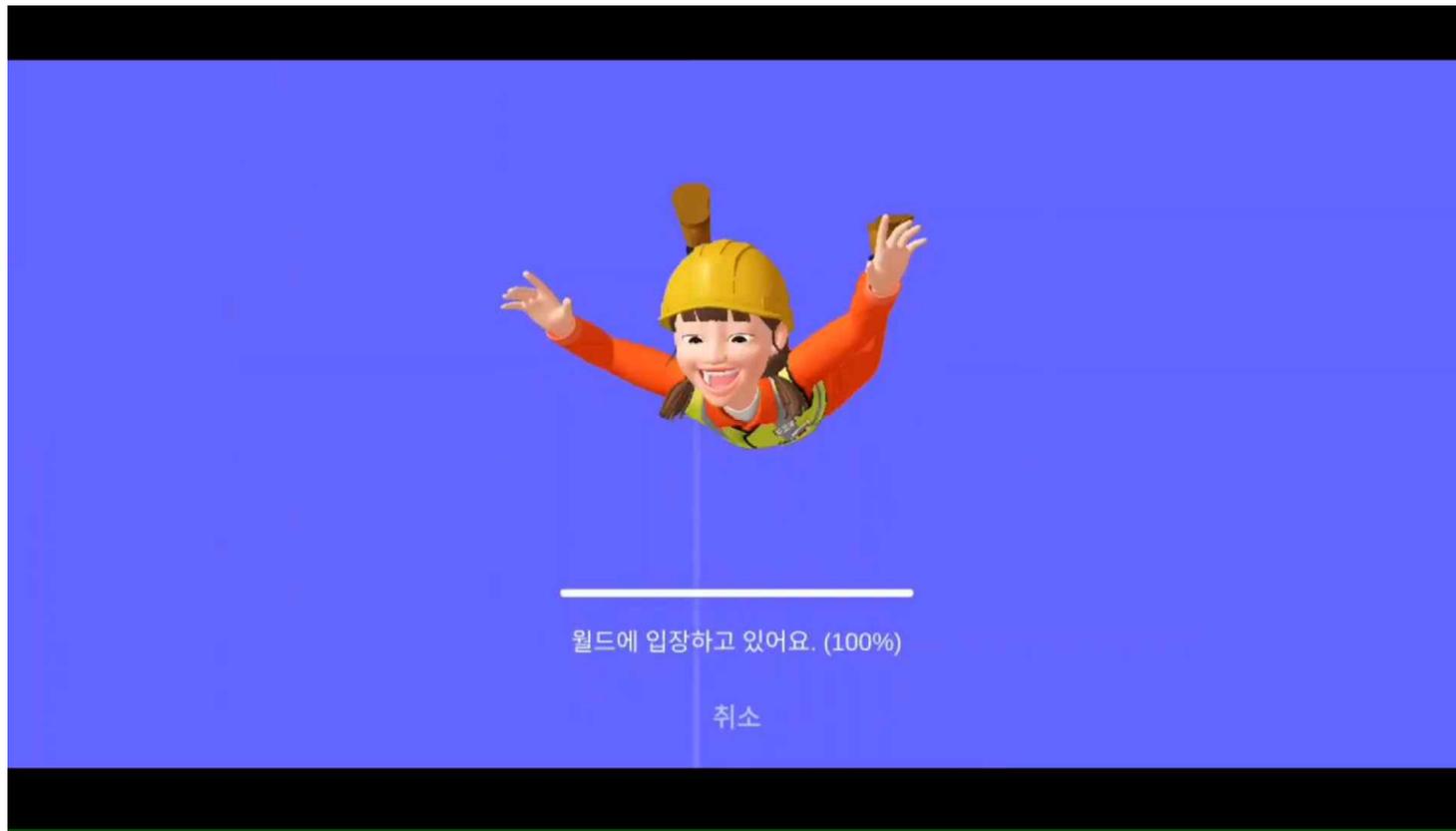
공기업도 메타버스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기업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메타버스 방식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VR과 홀로그램 메타버스 방식을 도입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시·경연대회**인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의 3D 전시 컨벤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관람뿐만 아니라 명함 교환, 음성·화상 채팅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보안 회의가 가능하다.

출처 파이낸셜 투데이 2021.09.06

# 메타버스와 보건안전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의 단계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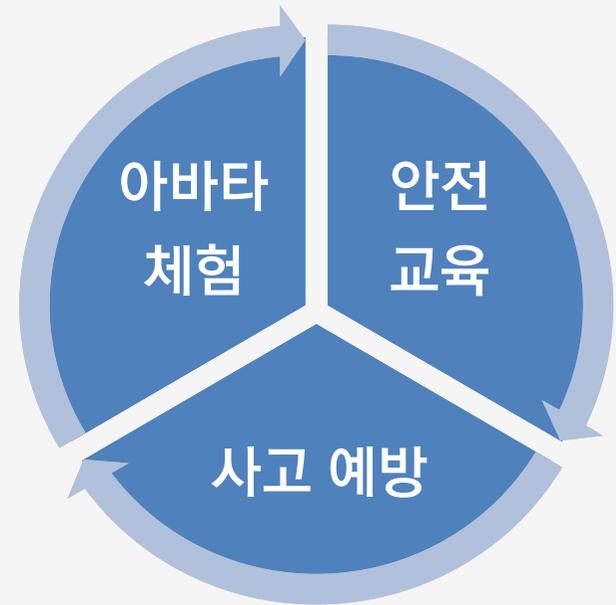
플랫폼 구축 : 사용자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안전 세계 구축 또는 개발  
(가칭 메타안 - 안바타)



콘텐츠 생산 : 메타버스 내에 이용자  
스스로 개설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 제공  
(안전장비 디자인 판매, 획득)



디바이스 개발 : 메타버스를 보다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한 AR VR 실행 디바이스 활용  
(페이스북-오큘러스 퀘스트)



| 메타버스의 활용 |

# 메타버스와 보건안전

---

안전 플랫폼 개발 :

위험 요인별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투자 노력이 필요

사고 예방 교육의 대안 :

아바타 직접 체험 또는 위험 기계 설계시 위험 요소 제거

안바타 인플루언서 :

산업 재해 예방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천만명 서명운동



# 메타버스에 입장하시겠습니까?

YES

NO



# 코로나 시대의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 연합회  
2022년 제14회 보건안전포럼 프로그램

2022. 7. 7(목)  
한국화학연구원 조아라 보건관리자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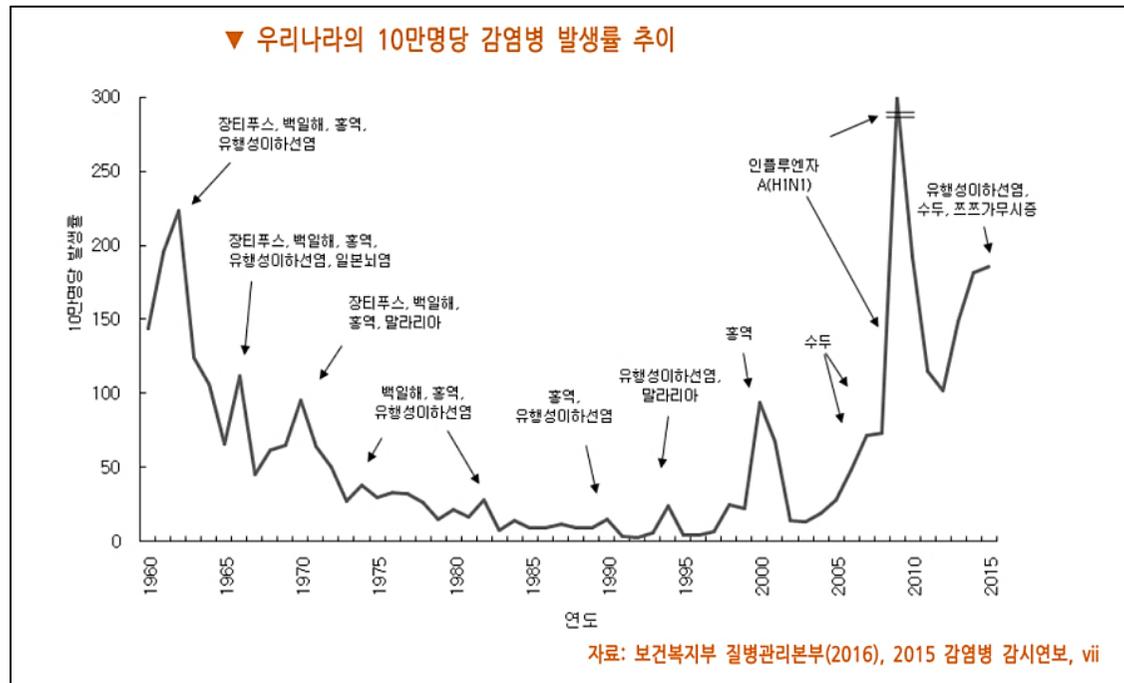
1. 감염성질환이란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3. 사업장 감염성 질환 관리 개선 방향

# 1. 감염성질환이란

감염성 질환 국내 발생 동향



# 1. 정의 및 관련 근거

감염성 질환 전 세계 발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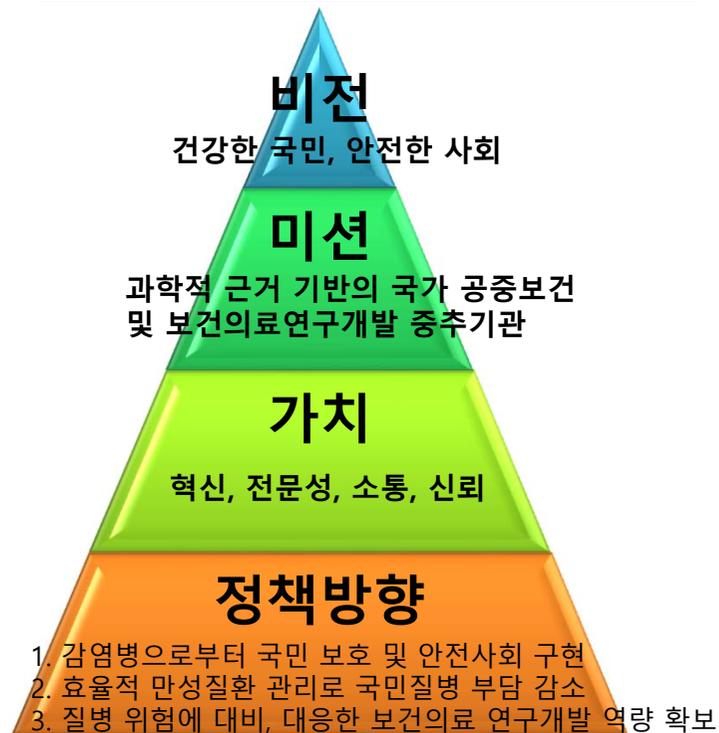
전염병	발생 연도	결과
장티푸스	기원전 430년	최대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에 패함
홍역·장티푸스·천연두	235~284년	로마제국 몰락 로마 인구 3분의 1 사망
페스트	1346~1353년	중세유럽 인구 3분의 1 사망, 중세 봉건질서 붕괴
천연두	1600년대 초	아메리카 대륙 점령, 대륙 원주민 다수 사망
스페인독감	1918~1920년	5000만명 사망, 1차 세계대전 종결

순위	전염병	병원체	병원체 종류	사망자(명)	유행 기간	치료제	예방백신	기타
1위	에이즈	에이즈 바이러스(HIV)	RNA 바이러스	3900만	1960년~현재	○	X	미국에서 최초 발견
2위	스페인독감	H1N1 인플루엔자A		2000만	1918~1920년	○	○	제1차 세계대전이 대유행 부추김
3위	아시아독감	H2N2 인플루엔자A		200만	1957~1958년	○	○	중국 야생오리에서 변종 발생
4위	홍콩독감	H3N2 인플루엔자A		100만	1968~1969년	○	○	홍콩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
5위	7차 콜레라 유행	콜레라균	세균	57만	1961년~현재	○	○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
6위	신종 인플루엔자	H1N1 인플루엔자A	RNA 바이러스	28만4000	2009년	○	○	멕시코에서 발견된 뒤 43개국 전파
7위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		4877	2014년	X	X	남수단에서 처음 발견
8위	콩고 홍역	홍역 바이러스	세균	4555	2011년~현재	X	○	홍역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병
9위	서아프리카 뇌수막염	수막구균A		1210	2009~2010년	X	○	1805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대유행
10위	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	RNA 바이러스	774	2002~2003년	X	X	중국 남부에서 최초 발병

자료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1. 감염성질환이란

질병관리청



## 핵심사업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

-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 강화
- 결핵, 인플루엔자, 매개체 감염병 등 철저한 감염병 관리 예방

###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 질병부담 감소

###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로 질병 극복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구분



### 정기 관리

- 건강진단 시행 및 예방접종
-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계절별 감염병 교육 및 홍보
- 방역 물품 보유 및 관리
- 대응 훈련 등

### 위기 경보 발령 시

- 사전 대응 체계 점검
- 해당 감염병 교육 및 홍보
- 방역지침 수립 및 감시체계 운영
- 비상 대응 조직 및 체계 가동 등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정기관리



### 지침마련, 모니터링 및 홍보

-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
- 계절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염병 홍보 및 교육

K O S H A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ROCT - SHG - 29
	감염병 관리 기준	제(가)정일자	2021. 03. 31.
		개정번호	0차
		페이지	2 of 14

**1. 목적**  
본 지침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에서 손실을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손실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완화와 예외조치를 통하여 감염병의 확산 및 재출현을 방지하여 인명에 대한 사고 예방, 연구활동 중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연구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확진자"라 함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 및 한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의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 "유증상자"라 함은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자로서 병원체가 인체 내에서 침입한 것으로 의심 또는 감염병 판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전자격리"라 함은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자를 일정 기간 격리시설에 수용, 입원시켜 외부인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감염"이라 함은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시키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 "전염"이라 함은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가 타인에게 해당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역학조사"라 함은 감염병/의심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감염병 판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 등의 활동 및 감염병 예방 활동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원장

- 감염병 발생 시 비상체제로 전환 지시
- 감염병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결정

4.2 보건관리과

- 정부기관, 기업의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유지
- 감염병 예방·대응에 대한 계·계정 실시
- 감염병 판자 및 접촉자/유증상자 증상 관리 및 증상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예/방/수/칙

**0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0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세요.

**03** 물은 끓여 마세요.

**04**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섭취를 꼭 하세요.

**05**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마세요.

**06**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82도 20분  
8분, 80도 15분 8분 50초 10분 8분)

\*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① 물이 흐르지 않음 ② 수돗물이 낡음 ③ 배변 전후 ④ 기저귀 교체 전 후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⑥ 외출 후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 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국가위기경보 '관심'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사전 대응 체계 점검  
해당 감염병 예방관리 및 교육, 홍보



### 국가위기경보 '주의'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예방관리 지속



### 국가위기경보 '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지속적 감시체계 운영 및 전직원 대상 홍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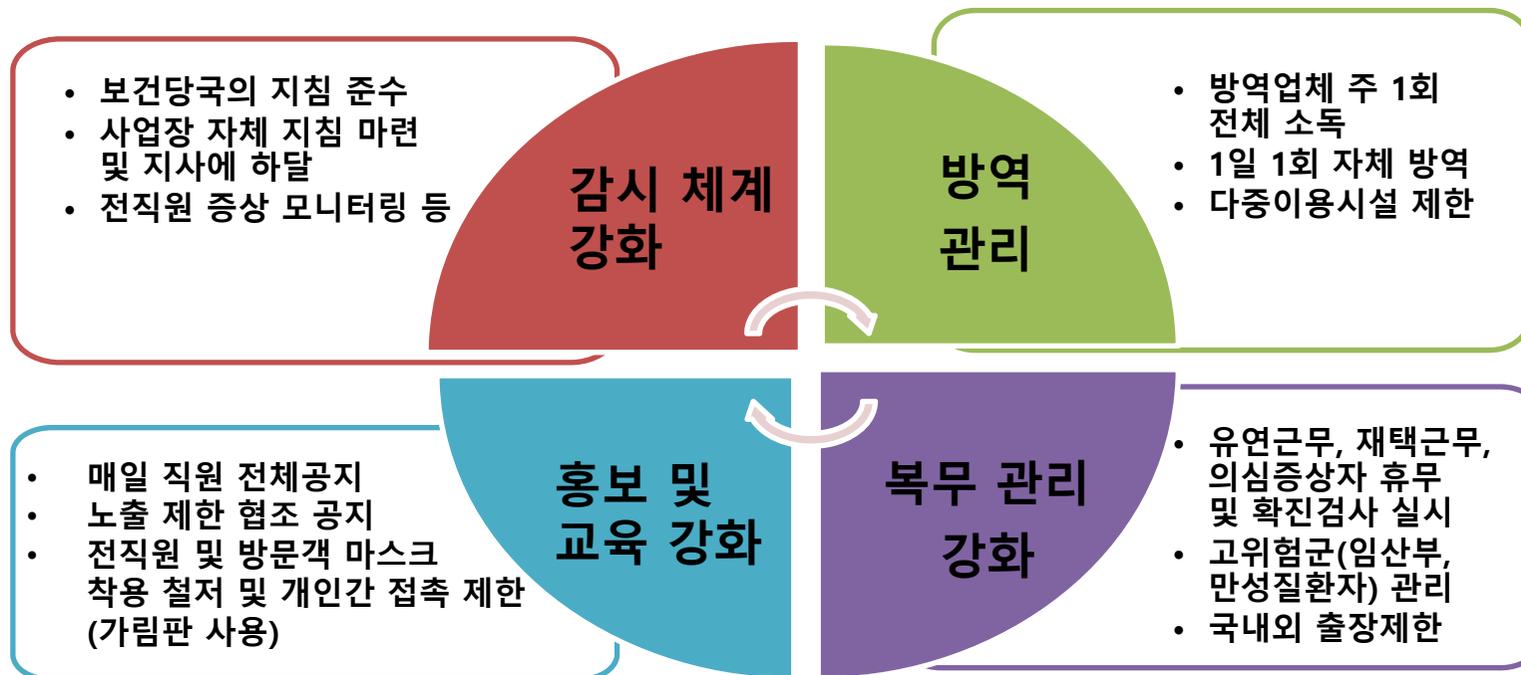
### 국가위기경보 '심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또는 사내) 전파

사업주 중심의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방역조치  
강화 등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 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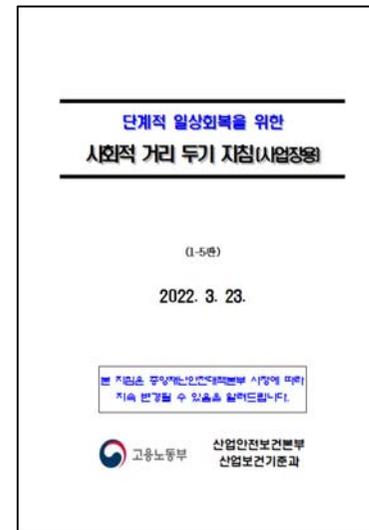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가. 전담조직 구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 나. 방역관리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 을 마련하여 시행
- 다. 비상연락체계 구축(보건소, 의료기관 등)
- 라. 확진자 발생 대응 시나리오, 비상조직 구축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2. 기업의 업무연속성(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계획

가. 정의 : 재난(감염병 등) 발생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 체계

나. 예시 : 정부가 발표하는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기업은 BCP를 수립하고 가동함



이미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3. 코로나19 방역 댕층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

#### 4. 주요 방역 내용

: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가림막 설치, 홍보 배너 및 포스터 게시,  
추가 인력 활용, 정기 및 수시 소독, 단체 SMS발송 등

실제 수행 사진

--	--	--	--	--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5.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수행

외부인 방문자 증상 모니터링  
건물별 체온측정기 설치 및 전직원 증상입력 전산 프로그램 개발

실제 수행 사진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5.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수행

사내 다중이용시설(통근버스, 카페, 체육시설) QR코드 운영 시행

<시행 전>

실제 수행 사진

<시행 후>

실제 수행 사진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5.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수행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확산 예방  
: 건물 폐쇄 및 방역(소독) 시행, 확진자 발생 안내, 접촉자 조사 등

실제 수행 사진

# 2. 사업장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

위기경보 발생 시 : 코로나19



## 6.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행정관리자) 지정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지정	
	2) 직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 마련	<input type="checkbox"/>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립	
	3) 전체 직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의료기관(신원조사, 이송병의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한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2단계) 작업내용 순차적 확대 (3단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3단계)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 특히 일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은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사차출퇴근제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적극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회의, 교육, 모임 및 화상, 출장 등	1) 회의는 긴급적 영상회의(스카이프)는 경우 영상전화로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여자 간 거리 유지, 유동성 장의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자자 참석 금지, 준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1) 대면실사가 불가하면 경우 소규모로 실시(인원제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3)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도를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알뜰 귀가하는 문화 형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5-1) 불가피 모임 시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 1.5단계) 50명 이상 객실 방역수칙 준수 지켜져 신고장의 (2단계) 100명 미만 실시(비필수적인 회의)는 15단계 적용, (2.5단계) 50인 미만 실시 (3단계) 10인 미만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격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열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의심 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C 이상)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 등)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3) 근무 중 발열(37.5°C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통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 직렬 간 거리를 2(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정이 어려운 경우 칸막이, 책상·직업대 유지 및 방벽을 조성하거나 유증자 근무자 격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3) 좁은 공간에 직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직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2단계, 3단계 적용)	4-1) 개인 간 거리 유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2) 공용 장비(입수시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4) 식사 시 대화 자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소독 및 위생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2) 개인용 정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3)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4) 2단계 시 실내 전체 및 밀폐도가 높은 실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5)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정결을 유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6) 손씻기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7) 약수 등 신체접촉 구로오리기 등 징검돌이 되는 행위 자제 * 전라북도에서는 금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청결	8)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9)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9-1) 탑승자 기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9-2) 음식을 섭취 금지(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9-3) 한자리 띄어 앉기 또는 순회중지(3단계 적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요	
	* 공간은 "아니오", "미지정", "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특이사항	(관학) 재검문화시설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경영상 수익 감소 배로	

### 3. 사업장 감염성 질환 관리 개선 방향



#### 1.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감염성질환 관리 역할 명시 필요

- 교육부의 학생건강정책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감염성 재난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언급 없음
- 사업장 감염성 재난 대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조직 차원의 업무 협조 필요

#### 2. 사업장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미흡

- 보건관리자를 위한 감염성질환 관리를 위해 전문화 교육의 활성화 요구됨
- 노동자 국외 출장 전후 유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의무화된 교육내용 개발 필요

#### 3.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방문 수리 기사, 각종 플랫폼 노동자, 재택근무가 불가한 연구직)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수립 필요

####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과 같이 보건관리자의 직무요구가 높아지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관리(권한 조정, 정원 확충 등)가 필요함

## 참고문헌



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kdca.go.kr/healthinfo>)
2. 중앙시사매거진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9678>
3. 동아사이언스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7285>
4. Global trends in preparation for future infectious diseases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어보건기준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1-6판'(2022. 4. 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2022. 4. 18)
7.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정인숙, 유정옥, 하미정. 사업장의 감염성재난 대응체계 : 2015년 메르스 유행을 중심으로. 2017.26(4)
8. 보건의료 RnD 전문가 리포트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9. 문다은. 국내 코로나 19(COVID-19) 발생 이후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 서울
10.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코로나19에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 2020

감사합니다.